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35호
2019. 5. 29.(수)

차 례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497호)1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상품권의 종류 및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특별가맹점의 등록 신청 및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6.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전화: 042-608-6924, FAX: 042-608-3831, E-mail: pcs83dong@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담당자 백지숙(전화: 042-608-69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상품권의 보관·판매 등의 역할 뿐만 아니라 판매대행 업무를 총괄하여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정산, 보고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2. “특별가맹점”이란 대덕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자체 할인 등의 독자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3. “상품권 공카드”란 향후 충전·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제가능 금액이 없는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4. “충전”이란 전자형 상품권을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종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의 명칭은 “대덕e로움”이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과 전자형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는 전자형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종이형 상품권은 향후 발행 시점에 정하도록 한다.

③ 상품권은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조례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할인 판매 및 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이벤트 개최 및 지원
3. 판매대행점 및 특별가맹점의 상품권 사업 시행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품권 구매 및 할인) ①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맹점 대표는 제외한다)이 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설·추석날을 기준으로 20일 전부터 10일 후까지: 상품권 충전 금액의 10퍼센트 할인
2. 제1호 외의 기간: 상품권 충전 금액의 6퍼센트 할인
3. 구청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출시 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 또는 구청장이 판매대행 협약을 중도에 합의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판매대행자 또는 구청장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위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 간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에서 총괄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공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운영대행사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의 입회 아래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수수료 지급) 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산정은 구와 판매대행점 간 협약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간 운영비 정산은 상호 협약사항에 따른다.

제9조(특별가맹점 등록 신청) ① 특별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맹점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가맹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구청장과 특별가맹점 신청인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별지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등록된 특별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덕e로움 특별가맹점 지정서(이하 “가맹점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가맹점은 제4항에 따른 특별가맹점 지정서를 실내 잘 보이는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2. 특별가맹점 등록 계약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특별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가맹점 등록신청 제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덕사랑상품권 공카드 인계·인수서

1. 대덕사랑상품권 공카드 년 월 일자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총 〇〇종 〇〇장

2. 대덕사랑상품권 공카드 인계·인수 사항

대덕구, 〇〇(운영대행사), 〇〇(판매대행점)은 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장을 0000년 00월 00일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인계·인수자> ※ 총괄 판매대행점이 인수하는 경우

대 덕 구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운영대행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판매대행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본 서식은 운영대행사의 약관에 따라 추가·수정될 수 있음.

(앞면)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		주요업종	
	간판명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장 : 휴대폰 :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p>「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 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대덕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1.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대덕구가 발행하는 대덕사랑상품권을 상품권 소지자가 특별가맹점에서 유통함에 있어 대덕구청장과 등록된 특별가맹점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등록된 특별가맹점(이하 “특별가맹점”이라 한다)이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구청장이 특별가맹점으로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대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특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대덕구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본 계약은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가맹점으로 등록된 자와 계약하며, 특별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특별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가맹점 등록취소와 책임) ①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특별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특별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상품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특별가맹점이 본 계약당시의 영업행위와 상이한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으로 업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특별가맹점 등록 취소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특별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특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특별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4. 특별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별가맹점은 사용자가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상품권 특별가맹점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실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7. 특별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자체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으로 가맹점 지정서에 혜택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혜택사항 변경 시 변경시행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 취급제한) 특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변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2.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대덕e로움이라는 카드 명칭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배상책임) 특별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8조(결제수수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하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환전) 사용자가 특별가맹점에서 결제 시, 3영업일 이내에 결제금액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앱에 등록된 가맹점주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성신행 및 업무협조) ① 구청장과 특별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가맹점은 구청장이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를) ①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특별가맹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특별가맹점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덕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각각 기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덕구			가맹점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			상 호 :
번길 20(오정동)			주 소 :
대표자 : 대덕구청장 (인)			대표자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대행사의 약관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대덕구 제 - 호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혜 택 사 항 :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으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대 덕 구 청 장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대덕 제 - 호)

신청인	상 호		업 태	
	대 표 자		중 목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업 자		사 업 장	
신청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사 업 장		휴 대 폰	
	전화번호		번 호	
해지 사유				
<p>「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덕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관 계 법 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재고, 환전 현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을 희망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지정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서를 교부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